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5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김정재·권영세·김은혜

윤영석 · 엄태영 · 권영진

성일종 • 서범수 • 윤재옥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 한 산업구조이며, 이는 국가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하 고 있음.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역시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받는 형태로, 위·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료까지 지급 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음. 더욱이 운송사업자 중 위·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수탁 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위·수탁차주에게 번호판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이 밖에도, 개인차주 위주로 구성된 산업구조로 인해 차주들이 안정 적으로 운송계약을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대량의 운송계약보다는 단 기·소량 위주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며, 다단계 운송거래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몰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인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 고자 함.

한편,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과적·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이에,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명칭과 정의를 변경(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등)
- 나. 위·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최소운송 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선의의 운송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3조제7항제1호나목·제12항· 제13항 및 제16항 신설,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12호의3, 제40조의3제3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안 제3조제7항제1호다목)
-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삭제, 제5조의8,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신설, 제6 7조제1호의2 삭제 및 제1호의3 신설, 제70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호의2 신설)
- 마.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 바.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안 제

- 10조의3 신설, 제11조제18항, 제1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23조제1항제8호, 제26조제4항, 제7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 사. 위·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6항, 제2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1호 신설, 제40조제1항, 제40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 아.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안 제11조제20항 및 제21항 신설, 제12조제1항제9호 신 설, 제23조제1항제8호, 제66조제1호 및 제2호)
- 자.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안 제11조의2제5항, 제1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제23조제1항제8호)
- 차. 운행제한단속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 등(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제44조제4항 신설, 제44조의2제3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 카.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대상에 포함(안 제19조제1항제15호 신설, 제40조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항, 제9항 신설, 제68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로, "안전운임위원회"를 "표준운임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 임으로서"를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로, "안전운송원가" 를 "표준운송원가"로, "안전운임위원회"를 "표준운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안전운송운임"을 "표준운송운임"으로, "운송가맹사 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를 "운송가맹사업자 (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를 "지급 하는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위탁운임"을 "표준위탁운임"으로, "운수사업자"를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7항제1호나목 중 "제13항"을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단서 중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를 "위·수탁차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조제1항제1호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 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로서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운송 실적을 제출한 위·수탁차주로서 자신에게 경영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로부터 배정 받은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을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운임위원회"를 "표준운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를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가"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안전운임제도"를 "표준운임제도"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전단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임가"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을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의 심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의 세부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전단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 한다.

제5조의4의 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를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 차주의 소득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 당 운송품목의 표준운임을 공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라 표준운 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물차주의 소득수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8제1항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화물자동차의 운행 거리 및 연료 사용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세무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9(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화물자동차 표준운 송운임을 참고하여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산정하여야 한 다.
 - ②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화주와 화물차주의 화물운송계약 또는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의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에 미치지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제2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 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표준위탁운임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 제5조의10(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표준위 탁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 당한 방법으로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11(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 및 제40조제8항

- 및 제9항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 정계약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화물운송계약) ① 화주,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는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 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화주의 준수사항)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 2. 제11조제20항,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 제11조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를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등록을 위・수 탁차주의 명의로 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경영위탁자로 기재하고 운송사업자 허가 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 2. 제11조제20항,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20항 중 "화물이"를 "화물 또는 화물 외의 도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물품적재장치 등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제1항에 따라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7의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 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행위
-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9.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물품적재장치 등 화물자동 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 하여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12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제11조제2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1조제21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는지 여부
- 3. 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다 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3 중 "경우"를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소속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15. 제40조제8항에 따른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제7호·제7호의2·제8호의2·제9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2의2. 제11조제16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경영위탁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11. 제4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 만료 이후 일정기간 이 내에 자동차번호판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4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를 "제외한다"로, "현물출자한

사람"을 "보유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 하는 것을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간 주해서는 안된다.

제40조제7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6.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대폐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폐차 요구에 응하는 것을 명목으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7.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의 유지 및 갱신을 명목으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 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 ⑧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에게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누구든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 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수탁차주로부터 제7항제5호에 따른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① 위·수탁차주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만료 이전에 보유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① 위·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수탁차주가 제40조제10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수탁차주는 즉시 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12호의3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자등 또는 주유업자등의"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속된 차량 각각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수탁차주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운송 실적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62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각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아니하여"를 "아니하거나 제11조제2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행하여"를 "운행하거나 제12조제1항제9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로 한다.

제67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제6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40조제9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위·수탁차주로부터 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른 금전을 받은 자
-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조의9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 제70조제2항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의3을 제18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3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안전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 가"로 한다.
 - 4의3. 제10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 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 보하지 아니한 자
 - 4의4. 제10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 을 요청한 자
 - 18의3. 제4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 만료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위·수

탁차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 차 표준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4조(위·수탁차주의 운송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수탁차주의 운송 실적은 이 법 시행 후 운송 실적부터 적용한다.
- 제5조(표준운임 공표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에 적용하는 표준운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차량의 명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으로 운송사업자가 현물출자 받은 차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

- 년이 경과한 날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등록을 위·수 탁차주의 명의로 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불공정 위·수탁계약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7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위·수탁계약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 제8조(표준운송원가의 심의·의결 및 적용에 관한 특례) 제5조의4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2025년도에 적용하는 화물자동 차 표준운송원가로 본다.
- 제9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2호의3, 같은 항제15호, 제23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12.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
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u> 안정을 위하여</u>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	
<u>하여</u>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	표준운
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u>안전</u>	<u>임위원회</u>
<u>운임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u>.</u>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13.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
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 물자동차 <u>안전운임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가. 화물자동차 <u>안전운송운</u> 일: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 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u>운송가맹사업자</u>(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나. 화물자동차 <u>안전위탁운</u> 임: <u>운수사업자</u>가 화물차 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제3. 가 등) ① ~ ⑥ (생 략) 기
 -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⑦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

<u>표준운송원가</u>
<u>표준운임위원</u> 회
 가 <u>표준운송운</u> <u>임</u> :
<u>운송가맹사업자</u>
(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지급하는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하여야 하는
나 <u>표준위탁운</u> 임: <u>화주 또는 운수사업자</u>
7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 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u>제13항</u>에 따라 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
 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
 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
 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
 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
 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2. (생략)

⑧ ~ ① (생 략)

	·.
1.	
	가. (현행과 같음)

나. <u>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u> 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3항---

다.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 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조제1항 제1호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2. (현행과 같음)
- ⑧ ~ ⑪ (현행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 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 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u>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u>였던 자는 제외한다.
- ③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 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 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12
<u>차주</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 1.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 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로서 임시허 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신의 운송 실적을 제출한 위·수탁차주로서 자 신에게 경영을 위탁한 운송사

(심·⑤ (생 략) <신 설>

-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물자동차 <u>안전운송원가</u> 및 화물자동차 <u>안전운임</u>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u>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u> <u>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u> 적용 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 류 등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u>안전운임제도</u>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업자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실
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인 자
① · ①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항제2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제6항에 따른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화물자동차 표준운임위
<u>원회의 설치 등)</u> ①
<u>표준운임위원회</u>
1 <u>표준운송원가</u>
표준은임
2. 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가가
3 <u>표준운임제도</u>
4 표준운임

<u>임</u>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②・③ (생략)
- ④ 화물자동차 <u>안전운송원가</u> 산 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 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 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 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 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 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 차 <u>안전운송원가</u>를 심의・의결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u>안전운</u> <u>송원가</u>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u>안전운임</u>을 심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표준운송원가</u>
<u>.</u>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의
<u>심의기준)</u> ①
<u>표준운송원가</u>
이 경우 화물자동차 표
준운송원가의 세부 항목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u>표준순</u>
<u> 송원가</u>
<u>표준운임</u>

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u>안전</u> 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 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u>안전운임</u>을 공표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2. (생략)
- ③ 화물자동차 <u>안전운송원가</u> 및

,
제5조의4(화물자동차 표준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의
<u> </u>
표준
<u> </u>
②
<u>표준운임</u>
<u>다만, 다음 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
품목에 대하여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
품목의 표준운임을 공표하지 아
니하고,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
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표준우속워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 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 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 하여야 한다.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 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 <삭 제>

<u>표준운</u>	<u>]</u>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물차주 의 소득수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 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 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u><삭</u> 제>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
표준운송원가 표
<u> 준운임</u>
<u>.</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

② (생 략)<신 설>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화물자동차의 운행 거리 및 연료 사용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세무관서의장 등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의9(화물자동차 표준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화물자동차 표 준운송운임을 참고하여 운수사 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산정 하여야 한다.

- ②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는 화 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표준위 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화주와 화물차 주의 화물운송계약 또는 운수사 업자와 화물차주의 화물운송계 약 중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

<신 설>

<신 설>

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 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표준위 탁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 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2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표준위탁운임의 지급 의무 를 위반한 화주 또는 운수사업 자에 대해 화물자동차 표준위탁 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명령 할 수 있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표준위탁 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 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 자동차 표준위탁운임을 게시하 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1(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표준위탁운임에 미 <신 설>

<신 설>

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 및 제 40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불 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화물운송계약) ① 화주,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는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화물운 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는 경 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 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표준 화물운송 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0조의3(화주의 준수사항)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b)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 <삭 제> 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 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 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 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 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 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 · 수탁차주에게 저 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 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 정할 수 있다.

16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 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 | 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 을 보유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

- 1.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 보하지 않는 행위
- 2. 제11조제20항, 「도로법」 제 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① (생략)

⑧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 교통법 |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생략)

②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 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 <u>부를 위탁한 경우----</u> 「자동 차관리법 | 에 따른 차량 등록을 위ㆍ수탁차주의 명의로 하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 · 수탁차 주는 운송사업자를 「자동차관 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에 경영위탁자로 기재하고 운송 사업자 허가 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⑧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 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 보하지 않는 행위
- 2. 제11조제20항, 「도로법」 제 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 ① (현행과 같음)
- 물 또는 화물 외의 도구가 ----

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②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 저 송 의무 등) ① ~ ④ (생 략)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 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 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② 운송사업자는 물품적재장치
등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
해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
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
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u>아니 된다.</u>
◎ ~ ❷ (현행 제21항부터 제2
3항까지와 같음)
<u>\$\text{25}\tag{5}\tag{5}\tag{7}</u>
<u>제24항</u>
1. • 2. (현행과 같음)
∥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
송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라 화
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업자에 한한다)

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 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 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 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신 설>

8. (생 략) <신 설>

<신 설>

ᅦ	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l ~ 7 (혀해과 간음)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 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9.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물품적재장치 등 화 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9. (생략)

② (생략)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할 수 있다.

<신 설>

1. (생략)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2. 제11조제2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1항제10호

필요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
하는 장치에 대하여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u>10</u> .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에 대한 조사 등) ①
1 /처레기 기·O\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제21항 또는 제12
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화
물자동차를 운행하였는지 여
<u> </u>
2. 제11조제24항 또는 제12조제
1 하 괴 1 이 ㅎ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 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
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
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
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
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
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

3. 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선명령)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 <삭 제> 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 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 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 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 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 하도록 조치
-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 | <삭 제> 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 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 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생략)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 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 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8. (현행과 같음)

속) ① --------. 다만. 제16조제9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

② ~ ⑥ (생 략)

-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기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12의2. (생 략)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 14. (생략)

가취소 등) ①	할 수 없다.
가취소 등) ①	② ~ ⑥ (현행과 같음)
	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가취소 등) ①
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u>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u> 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u>하며, 제12호의3의 경우에</u>
12의3	는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1. ~ 12의2. (현행과 같음)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12의3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 <u>경우(소속 위·수탁차주가</u>
	제3조제13항제2호에 해당하
기근 HLO 거O근 고칭되니\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
<u> / </u>	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소속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
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 14. (현행과 같음)

- ②・③ (생략)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수 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 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 (생략) <신설>

- 3. ~ 7의2. (생략)
- 8. <u>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u>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9. 10. (생략)

15. 제40조제8항에 따른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소) ①
1. • 2. (현행과 같음)
<u>2</u> 의2. 제11조제16항 단서를 위
반하여 운송사업자를 「자동
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
록원부에 경영위탁자로 기재
하지 않은 경우
3. ~ 7의2. (현행과 같음)
8. <u>제12조제1항제3호·제7호·</u>
<u>제7호의2·제8호의2·제9호</u>
또는 제10호
9.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항) ① ② (생 략)
 - ③ 삭 제
 -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 자에게 화물의 종류 •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 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삭 제
 - (6)·(7) (생 략)
-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 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 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 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u>11.</u> 제4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위 · 수탁계약 만료 이후 일 정기간 이내에 자동차 번호 판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 지 아니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 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u>운송사업자</u>
또는 화물차주

⑥・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 제외한 다-----

-- 보유한 자 -----

<후단 신설>

② ~ ⑥ (생 략)

⑦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무효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6.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대폐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폐차 요구에 응하는 것을 명목으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7.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 에게 위·수탁계약의 유지 및 갱신을 명목으로 위·수탁계약 의 금 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 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

<u>5</u>.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하는 경우

8. (현행 제5호와 같음)

- ⑧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에게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누구든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수탁차주로부터 제7항제5호에 따른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① 위·수탁차주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만료 이전에 보유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① 위·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 관한 사항을

제40조의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 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 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1.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
- 2. (생략)

④ (생략)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③ (생 략)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수탁차주가 제40조제10
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
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
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수탁차주는 즉시
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u>4</u>
 제19조제1항제1호 · 제2호 ·
<u>제3호·제5호 또는 제12호의3</u>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등) ①・② (생략)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 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 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 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④·⑤ (생 략)
- - ① (생략)
 - 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 ----- 운송사업자등 또 는 주유업자등으로 -----

 - 등 또는 주유업자등의 -----

운송사업자

- 1. 2.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 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 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 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 등)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무 등) ①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

<u>들 받은 자는 소속된 차량 각</u>	긱
에 대하여	
③ 위・수탁차주는 필요한 경	우
자신의 운송 실적을 국토교통	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π	1)5
항까지와 같음)	
<u><</u> 삭 제>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표준운송원가 ------ 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② (생략)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하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게여고(한한의 제의 6) (1)
<u>자</u>
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u>자동</u>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u>아</u> 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②
	<u>자동</u>
-	차손해배상진흥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	한국석유관리원
제	66조(벌칙)
	1
	<u>o}</u>
	<u>니하거나 제11조제21항을 위</u>
	<u> 반하여</u>
	2

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 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 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 <u>받은</u> 자

<신 설>

2. ~ 7. (생 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삭 제

<신 설>

	운행하거나
제12조제1항제9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또	포함한다)를
<u>위반하여</u>	
제67조(벌칙)	
1. (현행과 같음)	
<삭 제>	
<u> </u>	
1 시 이 - 레드코 시 () 제 4 중	ં દામાં
1의3. 제5조의9제4힝	'글 위반아
여 서로 부정한 금	남품을 주고
<u>받은 자</u>	
2. ~ 7. (현행과 같음	<u>></u>)

1. ~ 3. (현행과 같음)

5. 제40조제9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신 설>

- 2.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2. (생 략) <신 설>

위・수탁차주로부터 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른 금전을 받
<u>은 자</u>
제70조(과태료) ①
<u><삭 제></u>
1의2. 제5조의9제5항에 따른 명
령을 받은 자로서 제5조의9제
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표준
위탁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
<u>급한 자</u>
2. · 3. (현행과 같음)
②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0조의3제1호를 위반하
여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
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5. ~ 18의2. (생 략) <u><신 설></u>

<u>18의3</u>. (생략)

19. ~ 26. (생 략)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
차 <u>안전운송원가</u>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
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을 진술한 자

③ (생 략)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u>자</u>
4의4. 제10조의3제2호를 위반하
여 제11조제20항,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
는 화물의 운송을 요청한 자
5. ~ 18의2. (현행과 같음)
18의3. 제40조제11항을 위반하
여 위ㆍ수탁계약 만료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자동차 번
호판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
하지 아니한 위・수탁차주
<u>18의4.</u> (현행 제18호의3과 같음)
19. ~ 26. (현행과 같음)
27
<u>표준운송원가</u>
③ (현행과 같음)